개정세법소식

제 2 호
2015년 1월 15일

(100-160) 서울시 중구 퇴계로28길 8, 만수빌딩 201호 www.tax007.co.kr TEL:2279-0246/0224 FAX:2279-0240

2015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2015년 세법은 변경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당장 적용되는 내용은 의미있는 개정내용은 많습니다.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go.kr) 또는 법제처(www.law.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법

(1) 중소기업의 접대비한도액이 기본한도액 18,000,000원에서 24,000,000원으로 인상되어 접대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6,000,000원 인상되었습니다.
(2)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를 2015년 7월1일부터 의무화하고, 2016년부터는 종이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을 불이행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가 취득가액 100분의 1이하(5천만원한도)로 인상되었습니다.

2.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에서 제외합니다.
(1) 소규모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2천만원 이하는 2016년간비과세하고, 2017년분부터는 14%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 거주자의 판정기준을 1년이상에서 183일이상 거소를 둔 자로 강화하였습니다.
(3)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과 달리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4) 퇴직소득공제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전환하였습니다.
(5) 중소기업의 접대비한도액이 18,000,000원에서 24,000,000원으로 기본한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6)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소득도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고,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조특법

(1)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2) 적격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주택임대관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4)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한도가 2017년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5) 기부자가 기부금세액공제 상당액을 본인이 받는 대신에 기부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기부장려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1)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2%가 적용되던 것에 대하여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해외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5. 기타

(1) 해외재산의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위반금액 5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20%의 과태료가 초과시 2년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2) 역외탈세의 경우에 부과제척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가산세율을 60% 적용합니다.
(3) 신용카드로 납부시 현행 한도 1,000만원을 없애고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4) 경정청구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5) 탈세제보포상금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 201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시 법인세액의 10%가 아니라, 국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1%,2%,2.2%)을 적용하고 공제감면세액을 빼서 법인이 4개월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제감면세액은 없습니다.
(7) 2015.1.1.부터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지급시 법인세법과 달리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여야합니다.

"지하식세무사의 잘나가는 사장님 절세공식, 어울림, 2013.1.15"의 인세 전액의 2배가 사회연대은행과 열매나눔재단의 사회적기업사업에 기부됩니다.